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 (제10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- 1)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- 2)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.

나.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 이상
가.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1호	200		
나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2호	제3호에 따른 금액		
다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3호	제3호에 따른 금액		
라.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7조 제2항제4호	100	150	200
마.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17조 제3항제1호	50		

<p>바.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2항제5호</p>	<p>200</p>			
<p>사.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2항제6호</p>	<p>200</p>			
<p>아.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3항제2호</p>	<p>50</p>			
<p>자.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2항제7호</p>	<p>200</p>			
<p>차.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</p> <p>1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2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3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4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길이를 3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5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, 길이를 3.0미터 이상 5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6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</p>	<p>법 제117조 제1항제1호</p>				
	<p>50</p>	<p>70</p>	<p>100</p>		
	<p>80</p>	<p>120</p>	<p>160</p>		
	<p>150</p>	<p>220</p>	<p>300</p>		
	<p>30</p>				
	<p>50</p>				
<p>100</p>					

<p>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, 높이를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, 길이를 5.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7)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</p>		<p>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)부터 6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</p>																	
<p>카.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(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)</p>	<p>법 제117조제1항제2호</p>	<p>차목 1)부터 7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</p>																	
<p>타.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·요구한 경우</p>	<p>법 제117조제1항제3호</p>	<p>차목 1)부터 7)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</p>																	
<p>파. 법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</p> <p>1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2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3)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4)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5)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</p>	<p>법 제117조제1항제3호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1054 1155 1171 1352">50</td> <td data-bbox="1171 1155 1287 1352">70</td> <td data-bbox="1287 1155 1402 1352">1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54 1352 1171 1597">80</td> <td data-bbox="1171 1352 1287 1597">120</td> <td data-bbox="1287 1352 1402 1597">16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54 1597 1171 1794">150</td> <td data-bbox="1171 1597 1287 1794">220</td> <td data-bbox="1287 1597 1402 1794">3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54 1794 1171 1991">50</td> <td data-bbox="1171 1794 1287 1991">70</td> <td data-bbox="1287 1794 1402 1991">100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54 1991 1171 2018">80</td> <td data-bbox="1171 1991 1287 2018">120</td> <td data-bbox="1287 1991 1402 2018">160</td> </tr> </table>			50	70	100	80	120	160	150	220	300	50	70	100	80	120	160
50	70	100																	
80	120	160																	
150	220	300																	
50	70	100																	
80	120	160																	

<p>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6)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				
<p>하.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2항제8호</p>	<p>200</p>		
<p>거.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7조 제3항제3호</p>	<p>50</p>		

### 3. 세부 부과기준

#### 가.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

- 1)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5만원
- 2)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: 1)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.

#### 나. 제2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

- 1)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10만원
- 2)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: 1)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.